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0나12614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이소운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향희

변 론 종 결 2021. 8. 11.

판 결 선 고 2021. 9. 29.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7. 선고 2018가소25807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방콕 소재 C(이하 ‘방콕 여행사’라 한다)는 D으로부터 2018. 9. 1.부터 2019. 5. 29.까지의 기간 동안의 방콕-제주간 D 왕복 항공권을 Hard Block 방식(여행사 등에게 미리 요금을 받고 특정한 날짜에 일정한 규모의 좌석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였다.

나. 방콕 여행사와 D 사이의 항공운송계약에 따르면, 방콕 여행사의 사유로 중도 운항 포기시 관련된 모든 책임은 방콕 여행사가 부담하고, 한국과 태국에 입국하는 내·외국인 승객의 입국거절 또는 이탈 상황 발생시 수반되는 절차와 비용은 방콕 여행사가 책임져야 한다.

다. 피고는 방콕 여행사로부터 방콕-제주간 D 왕복 항공권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두었다.

라. 원고는 2018. 10. 22.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E 박람회에 참석할 외국인들을 초청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방콕-제주간 D 왕복 항공권(2018. 11. 1. 2:10 방콕출발, 2018. 11. 3. 제주 출발) 25장을 1,200만 원에 구매하였고(이하 ‘이 사건 항공권’이라 한다), 그 대금으로 2018. 10. 22.과 2018. 10. 27. 각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가 초청한 외국인들은 2018. 11. 1. 방콕공항에서 대한민국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탑승수속 불가 통보에 따라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가 초청한 외국인들의 입국목적에 제대로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초청한 외국인들이 ‘입국목적 불분명’이라는 사유로 탑승수속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외국인들에게 위약금으로 800만 원(=1인당 32만 원×25명)을 반환하였고, 그들의 이동 및 숙식을 위하여 425만 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이미 지급한 항공료 1,200만 원, 위 위약금 800만 원, 위 425만 원, 위자료 375만의 합계 2,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항공권을 구입하였으나,

외국인들이 탑승수속 불가 통보에 따라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항공권 구입을 위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1,200만 원은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으로서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다. 또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자항공권을 교부받았고, 승객 정보제공 등 거래의 모든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항공권 매매계약은 전자거래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이 적용된다. 원고는 2018. 11. 1.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이 사건 항공권 매매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2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라. 원고의 탑승객은 탑승불가 결정에 따라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상법 제823조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항해할 수 없는 경우로서, 위 상법 제823조의 유추적용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항공권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운임의 10분의 3을 제외한 나머지 840만 원(= 1,200만 원×0.7)의 반환을 구한다.

3.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운수업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예약정보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예약정보시스템을 열람하게 하여야 하고(출입국 관리법 제73조의2 제1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입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선박 등에 탑승하기에 부적당한 사람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사람의 탑승을 방지하도록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출입국 관리법 제73조의2 제5항).

나.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11. 1. 태국에 파견되어 근무중인 대한민국 법무부 IMM 연락관이 D 카운터에서 원고가 초청한 외국인들의 예약 여부를 확인하면서, 위 외국인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입수하였다며 위 외국인들이 탑승수속하러 올 경우 알려달라고 한 사실, 원고가 초청한 외국인들이 2018. 11. 1. 1:00경 탑승수속을 하러 하자 위 법무부 연락관이 위 외국인들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는데, 법무부 연락관은 ① 대부분이 여권 신규 발급자이고, ② (외국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E박람회 참가일정 여정표의 항공편과 이 사건 항공권이 일치하지 않으며, ③ 위 외국인들이 한국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첩보가 있고, ④ E박람회에 참가한다는 외국인들

전원이 화장품이나 뷰티업계 관련 명함조차 소지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입국목적 불분명'으로 탑승수속 불가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한민국 법무부 연락관은 이미 원고가 초청한 외국인들이 E박람회에 참가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출입국사무소에 위 외국인들의 입국목적은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오히려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제주공항 출입국사무소에 원고가 초청한 외국인의 명단을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6, 8, 11호증, 을 제2, 3, 4,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항공권은 환불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항공권이고,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직접 또는 원고를 대리하는 F에게 고지하였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항공권은 일명 Hard Block 방식(여행사 등에게 미리 요금을 받고 특정한 날짜에 일정한 규모의 좌석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구매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구매한 항공권은 좌석 이용조건이 엄격하여 계약이 이루어진 후 항공좌석에 대한 취소, 환불 등이 제한되는 것이다.

2) 원고는 2018. 11. 2.부터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E 박람회에 참가할 외국인들이 탑승할 항공권을 구입하려 G여행사의 F에게 연락하였고, F은 D 주식회사에 문의하였으나 해당 기간의 좌석이 매진되어 D 방콕지사를 소개하여 주었다. F은 2018. 10. 18. D 방콕지사의 H에게 방콕-제주간 왕복 항공권(2018. 11. 3. 방콕출발, 2018. 11. 5. 제주출발)을 문의하였고, H는 곧바로 피고의 대표이사의 판매 의사를 문의하여 F에게 전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의 대표이사는 H의 제안에 따라 항공권의 가격을 정하였고, H가 이를 F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H는 2018. 10. 18. F에게 '현재 에이전트가 하드블록으로 계약하여 판매중이라서 사용여부를 빨리 알려주셔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3) F은 2018. 10. 22.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일정변경으로 다른 항공권 구매를 원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가 2018. 10. 22.경 직접 통화하여 '항공권 대금을 현금으로 환불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항공권 25매를 1,2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원고는 2018. 11. 2.부터 개최되는 행사에 초청할 외국인들이 탑승할 항공권이 필요하였는데 이미 D 등에 문의하여 항공권 예약을 실패한 상황이었던 점, 원고가 문의할 당시에 기한이 매우 임박하였던 점, 피고의 대표이사가 '현금 완불'을 조건으로 내걸었음에도 이를 수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부터 환불불가라는 조건에 관하여도 고지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상황 때문에 이를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F은 2018. 10. 23.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탑승자 명단 일부를 송부하였고, 원고는 2018. 10. 26.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카톡을 봐 달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며, 이어 F이 같은 날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탑승자 명단을 송부하였다.

5)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는 2018. 10. 28. 발권 명단을 확인하며, 피고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초청객의 입국목적을 문의하였다.

6) F은 원고가 초청한 외국인의 숙소예약, 차량, 식사 관련 업무까지 모두 담당하였다.

7) 위 2) 내지 6)항에서 드러나는 F의 역할에 비추어 보면, F은 이 사건 항공권 구매에 있어서도 원고의 대리인이었다고 보이고,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H를 통하여 F에게 이 사건 항공권은 Hard Block 방식으로 구매한 것이라는 점을 알린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알린 것과 동일하게 평가된다.

나. 따라서 원고가 초청한 외국인들이 이 사건 항공권으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미리 고지한 환불불가 조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기지급한 항공료 상당의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전자거래법에 따른 청약 철회를 주장하나, 전자거래법의 청약철회는 통신판매업자(우편,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와 재화등의 구매를 계약한 소비자가 할 수 있는데, 피고가 통신판매업자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해상운송에 관한 법정해제를 주장하나, 위 해상운송 규정이 항공운송에 준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운송인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재철, 판사 문현정, 판사 강지현